

1. 제정 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2.11.15.)됨에 따라, 철도·도시철도 기본계획 단계에서 대도시권에 소재한 환승역에 대해 환승 시간·거리 등 환승편의성을 검토하는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가 시행됨('23.5.16.).

구체적인 환승편의성 검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상기 법률의 위임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세부적인 기술적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재위임하고 있음.

이에, 「환승편의성 검토 지침」을 제정하여 환승편의성 검토와 심의 등에 관한 요령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제도가 원활히 시행 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환승편의성 검토 원칙과 환승편의성 검토서 작성 요령을 마련하여 승강장 배치, 환승 동선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등 이 용자 관점에서의 환승편의 향상을 도모함(안 제4조 등)
- 나. 환승편의성 검토에 대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시기, 전문기관 기술 검토, 심의 요령 등을 규정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등)
- 다. 도시철도·철도 기본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인해 환승편의성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세부 검토 및 심의 요령을 규정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11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9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환승편의성 검토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11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른 환승편의성 검토의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승편의성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 따른 환승편의성 검토 시 적용한다.

② 환승편의성 검토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립권자”란 법 제7조의11제1항 각 호의 계획의 수립 또는 공고 전에 환승편의성을 검토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2. “환승시설”이란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승강장, 역 출입구, 보행이동 시설,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환승주차장, 자전거 보관소 등 이용자

환승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보행이동”이란 이용자가 환승을 위하여 보행이동시설을 이용하여 수평 또는 수직 이동 하는 것을 말한다.
4. “보행이동시설”이란 계단, 환승통로,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엘리베이터 등 이용자가 환승을 위하여 수평 또는 수직 이동 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장 환승편의성 검토서 작성

제4조(환승편의성 검토 원칙) ① 수립권자는 환승편의성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 이용자 환승 편의 향상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환승편의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존 도시철도 또는 철도 노선 선형 및 역사 위치를 고려하여 환승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노선 선형 및 역사 배치 계획
2. 환승 거리 최소화를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 승강장 배치
3. 환승 동선 간 간섭을 최소화한 환승 동선 체계 마련
4. 교통약자를 배려한 환승 체계 구축

제5조(환승편의성 검토서 작성) ① 수립권자는 법과 영에 따라 환승편의성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주요 검토 항목을 포함하여 환승편의성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환승편의성 검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철도 또는 철도 승강장 배치 계획
2. 도시철도 또는 철도 노선 간 주요 환승 동선 계획
3. 타 교통수단과의 환승 동선 계획
4. 보행이동시설 배치 계획
5. 환승체계도

③ 수립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승편의성 향상을 위한 사항을 검토하여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④ 수립권자는 체계적인 환승편의성 검토서 작성을 위하여 타 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에 환승편의성 검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행기관 등에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은 수립권자가 직접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환승편의성 검토 범위) ① 환승편의성 검토의 시간적 범위는 본 사업의 분석 연도와 동일하게 한다.

② 환승편의성 검토의 공간적 범위는 환승역에 도보 또는 연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범위로 하되, 역으로부터 최대 1km 이내로 한다.

제7조(환승 현황 검토)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환승 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 철도, 버스 등 연계교통수단 현황
2. 보행이동시설 등 환승역 내 환승시설 현황

3.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환승주차장 등 역사 외 환승 관련 시설 현황
4. 환승 및 이동 동선 현황
5. 토지 이용 등 도시계획 관련 현황
6. 기타 환승 관련 현황

제8조(환승 관련 계획 검토)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승 관련 계획 및 사업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립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 등 교통 관련 상위계획
2. 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3. 그 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환승 관련 계획 및 사업

제9조(장래 이용 수요 검토) 환승역의 장래 이용 수요는 법 제7조의11제1항의 계획의 수립 또는 공고 시 검토한 수요를 기본으로 하여 연계 도시철도 또는 철도 노선 간 환승 수요를 별표 2와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승강장 배치 계획) ① 수립권자는 기존 이동 동선과 도시철도 또는 철도 노선 선형 계획, 역사 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용자의 환승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승강장 배치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승강장 배치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 또는 철도 노선 선형 계획
2. 역사 배치 계획
3. 승강장 배치 형식

③ 수립권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승강장의 유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환승 동선 계획) ① 수립권자는 환승편의성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동선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신규 도시철도 또는 철도 노선과 기존 도시철도 또는 철도 노선 간 환승 동선
2. 신규 도시철도 또는 철도 노선의 환승역 승강장에서 역 출입구까지의 이동 동선
3. 신규 도시철도 또는 철도 노선의 환승역 승강장에서 타 교통수단으로의 환승 동선
4. 교통약자 이동 동선

② 수립권자는 환승 동선의 세밀한 검토를 위하여 건설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등 3차원 모델링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주요 환승 동선 간 간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고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보행이동시설 배치 계획) ① 수립권자는 보행이동시설의 배치를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② 보행이동시설의 규모와 수는 각 환승역의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③ 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보행이동시설의 배치를 검토하는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환승체계도) ① 수립권자는 환승편의성 검토 결과를 환승 동선과 환승 거리 등이 시각적으로 표현된 환승체계도 형식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환승체계도는 색상을 이용하여 각 환승 동선이 구분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③ 환승체계도에서 역 출입구는 거리와 방향으로만 표시한다.

제14조(환승편의성 검토서 양식) ① 환승편의성 검토서는 A4 용지를 좌철로 편집하고 글씨는 좌에서 우로 가로쓰기 한다.

② 통계표와 도면은 수립권자가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며, 제1항의 크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접어서 제1항의 크기와 편집 방향으로 통일한다.

③ 도면은 축척, 방위각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환승편의성 검토서의 표지에는 수립권자와 검토서 제출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장 환승편의성 검토 심의 등

- 제15조(환승편의성 검토 심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11 제3항에 따라 환승편의성 검토 내용에 대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별표 3과 같은 환승편의성 검토서(요약서 20쪽 내외 포함)를 작성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법 제7조의11제4항에 따라 환승편의성 검토 내용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별표 3과 같은 환승편의성 검토서(요약서 20쪽 내외 포함)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환승편의성 검토서에 대해 광역교통위원회에 환승편의성 검토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할 때에 광역교통위원회에 환승편의성 검토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실시할 때에 환승편의성 검토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수립권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과, 동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으로 철도를 건설하고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기 전에 광역교통위원회에 환승편의성 검토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16조(환승편의성 검토서 기술 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9조의9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환승편의성 검토 내용에 대한 별도의 기술적·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기술 검토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수립권자에게 환승 편의성 검토서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전문기관은 환승편의성 검토서 기술 검토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환승편의성 검토서를 기술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17조(환승편의성 검토 심의) ① 광역교통위원회는 환승편의성 검토서 기술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법과 영에 규정한 사항 및 제4조의 검토 원칙 등에 따라 성실히 환승편의성 검토 내용을 심의하여야 한다.
- ② 광역교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심의하여야 한다.
1. 원안 의결 : 환승편의성 검토서를 심의한 결과, 환승편의성 확보에 문제가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 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조건부 의결 : 환승편의성 검토서를 심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부결 : 환승편의성 검토서를 심의한 결과, 환승편의성 확보가 곤란

하여 환승편의성 검토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광역교통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조건부 의결을 하는 경우 법 제7조의11제2항, 영 제9조의9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등 환승편의성 검토 내용과 관련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이 없는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광역교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환승편의성 검토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8조(환승편의성 검토 심의 결과 통보) ① 광역교통위원회는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표 4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승편의성 검토 심의 결과가 조건부 의결된 때에는 수립권자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수립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광역교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수용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광역교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수용하지 아니하는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수립권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부터 제

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환승편의성 재검토 등

제19조(중대한 변경) ① 법 제7조의11제8항 및 영 제9조의9제3항에 따른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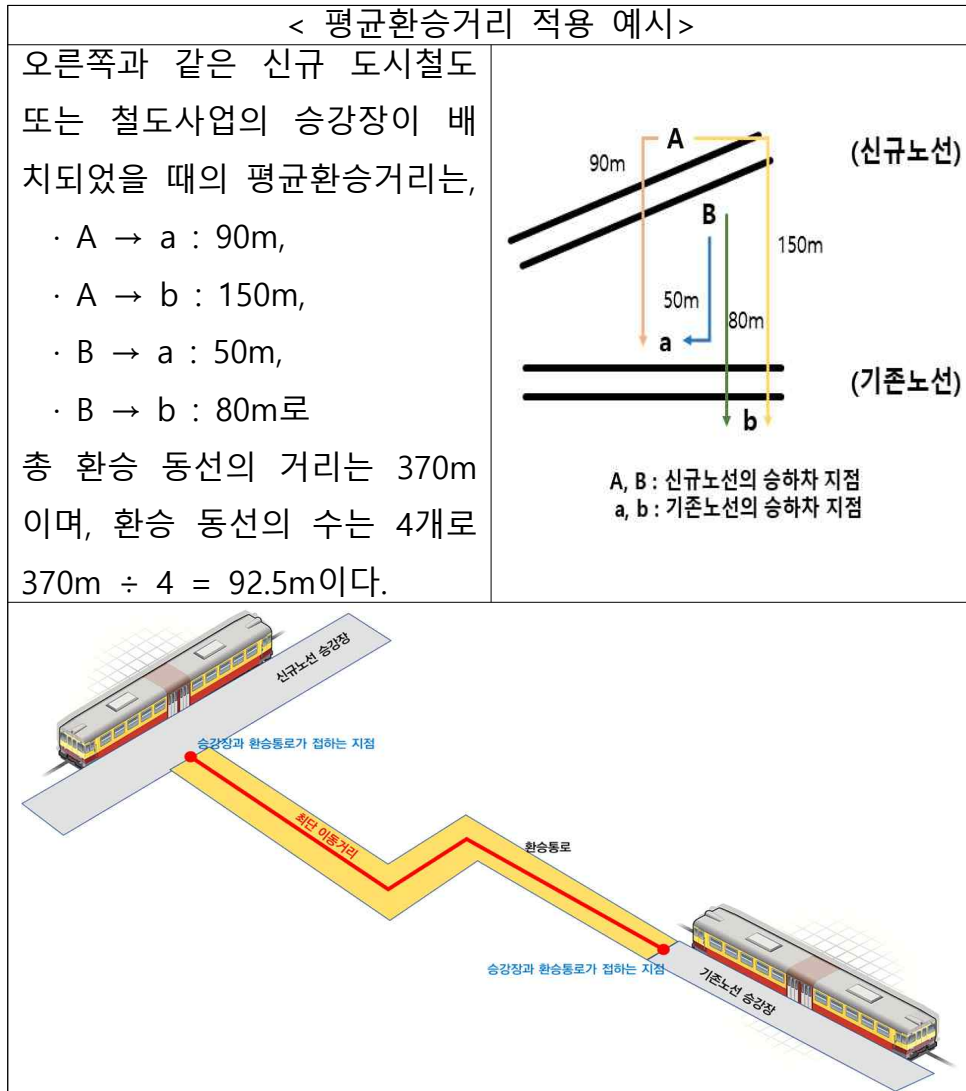
1. 개별 환승역의 평균환승거리가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
2. 환승역이 추가로 신설되거나 삭제되는 경우
3. 개별 환승역의 출입구, 환승통로 등 도시철도 또는 철도 역 내 환승 시설이 삭제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평균환승거리”란 신규 도시철도 또는 철도 승강장(승강장과 환승통로가 접하는 지점)에서 기존 도시철도 또는 철도 승강장(승강장과 환승통로가 접하는 지점)까지의 최단 보행이동거리(교통약자용 이동 동선은 제외하며, 경사구간은 경사거리를 적용한다)의 평균을 의미하고 환승역별로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text{환승역의 평균환승거리} = T = \frac{\sum D_{ij}}{N};$$

N : 신규노선의 승강장에서 기존노선의 승강장까지의 환승 동선의 수

D_{ij} : 신규노선의 승강장에서 기존노선의 승강장까지의 방향별 환승 동선의 최단 보행이동 거리



제20조(환승편의성 검토 변경 심의) ① 수립권자는 법 제7조의11제8항, 영 제9조의9제3항 및 지침 19조에 따라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환승편의성 검토를 다시 하여야 하며, 환승편의성 검토 절차 및 방법 등은 제2장 및 제3장을 준용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승편의성 검토에 대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시기 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는 시기에 대하여 광역교통본부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광역교통위원회는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환승편의성을 재검토

하는 경우 사업 진행단계, 재검토로 인한 사업비 증가 등을 감안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21조(환승편의성 검토 심의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년도 10월
에 당해연도의 환승편의성 검토 심의 수요를 조사하여 환승편의성 검
토 심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환승편의성 검토서 작성 절차 및 주요 검토 항목

단계	주요 검토 항목
1	검토 범위 설정
2	환승 관련 현황 및 계획 검토
3	장래 이용 수요 검토 (기본계획 제시안 준용)
4	노선 배치 계획 (기본계획 제시안 준용)
5	승강장 배치 계획
6	환승 동선 계획 (교통약자 포함)
7	환승체계도

[별표 2]

신규 노선과 기존 노선 간 역별 환승 수요

(단위 : 인/일)

신규 노선 역명	환승 노선	환승 수요
가역	A노선 ↔ B노선	00,000
	A노선 ↔ C노선	0,000
	A노선 ↔ D노선	000
	...	...
	소계	00,000
나역	A노선 ↔ b노선	0,000
	A노선 ↔ c노선	000
	...	...
	소계	00,000
다역	A노선 ↔ 1노선	0,000
...	...	...
합계		000,000

환승편의성 검토서

00 기본계획 환승편의성 검토서

1. 사업개요

- 가. 사업의 목적
- 나. 사업 추진 경위

2. 환승편의성 검토를 위한 현황 검토

- 가. 환승 관련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 나. 역사 등 환승 관련 현황 검토
- 다. 장래 이용(환승) 수요 추정

3. 환승편의성 검토

- 가. 환승편의성 검토의 주요점
- 나. 승강장 배치 계획
- 다. 주요 동선 계획
- 라. 환승시설 배치 계획
- 마. 환승체계도

[별표 4]

환승편의성 검토 심의 결과 통보서

00 기본계획 환승편의성 검토 심의 결과 통보서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나. 심의일시 :

다. 사업규모 :

라. 사업기간 :

마. 수립기관(시행자) :

바. 수행기관 :

2. 심의내용 :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부결)

가. 승강장 배치 계획

나. 동선 계획

다. 환승시설 배치 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11제3항에 따른

환승편의성 검토 심의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서명)

[별표 5]

환승편의성 검토 절차

